



○ 양평 제2동의 법정동 관할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일 부 지 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양평동 4가, 양평동 5가 양평동 6가, 양화동	양평동 3가 지역중 양평제 1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지역

○ 신길 제1동의 일부지역 관할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일 부 지 역 관 할
신길동중 95번지에서 우신국민학교를 연하여 도신로 이남중 신길동 159번지 35호를 기점으로한 신길동 202, 144번지 190호, 460번지를 연하는 이동 지역 및 경인가도 이북지역

○ 신길 제2동의 일부지역 관할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일 부 지 역 관 할
신길동중 101번지 7호를 기점으로하여 16번지 일부, 221번지 54호 를 중점으로 한 도신로 이북지역

○ 신길 제4동의 법정동 관할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일 부 지 역 관 할
신길동중 221번지 44호를 기점으로하여 신길로에 연하는 223, 233, 235, 249에 연하는 이동지역중 신길제1동장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 영등포 제3동 사무소 및 도림제1동 사무소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번지, 59번지 1, 2호
- 영등포구 도림동 75번지

부 칙

이 조례는 '91. 8. 1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구분	동사무소 소재지		법정동관할		구분	동사무소 명칭		법정동관할	
	명칭	소재지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명칭	소재지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영등포	양평제1동	영등포구 양평동 1가211-1	양평동 1가 양평동 2가		영등포	양평제1동	양평동 1가 양평동 2가	양평동 3가 중 경인고속도로 진입로를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으로 양평동 3가 69번지를 기점으로 하여 소방도를 따라 남쪽 양평동 3가1의1호를 종점으로 한 북서쪽 지역	
	양평제2동	영등포구 양평동 4가172-1	양평동 3가 양평동 4가 양평동 5가 양평동 6가 양화동		영등포	양평제2동	양평동 4가 양평동 5가 양평동 6가 양화동	양평동 3가 지역 중 양평제1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지역	
영등포	신길제1동	영등포구 신길동 465-2		신길동 중 95번지에서 우신국교를 연하는 도로 이남의 지역 중 신길동 160, 198, 202번지에 이르는 도로 이동지역 및 경인가도 이북지역 및 경인가도 이북지역	영등포	신길제2동	영등포구 신길동 465-2	신길동 중 95번지에서 우신국교를 연하여 도신로 이남 중 신길동 159번지 35호를 기점으로 한 신길로 202, 144번지 190호, 460번지를 연하는 이동지역 및 경인가도 이북지역	
	신길제2동	영등포구 신길동 166-41		신길동 중 95번지에서 우신국교를 연하는 도로 이북지역 중 신길제1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지역	영등포	신길제2동	영등포구 신길동 166-41	신길동 중 101번지 7호를 기점으로 하여 160번지 일부 221번지 54호를 종점으로 한 도신로 이북지역	
	신길제4동	영등포구 신길동 209-102		신길동 중 221번지를 기점으로 경수로에 연하는 223, 233, 235, 249에 연하는 이동지역 중 신길1동장의 관할 구역을 제외한 지역	영등포	신길제4동	영등포구 신길동 209-102	신길동 중 221번지 44호를 기점으로 하여 신길로에 연하는 223, 233, 235, 249에 연하는 이동지역 중 신길제1동장의 관할 구역을 제외한 지역	

##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구분	동사무소명칭	동사무소소재지	구분	동사무소명칭	동사무소소재지
영등포구	영등포제3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49번지 1호	영등포구	영등포 제3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번지, 59번지 1, 2호
	도림제1동	영등포구 도림동 81번지 2호		도림 제1동	영등포구 도림동 75번지

[별첨3]

1. 재산의 표시 및 매수 신청인

재산의 표시			매각대상 면적(m <sup>2</sup> )	매수신청인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m <sup>2</sup> )		주소	성명	
도림동144-203	대지	7	25 (7.5평)	도림동136-21	김갑수	
도림동144-205	대지	18				

2. 재산 현황

현용도	관리상태	감정액		연고자 유무
		감정기관명	감정가격	
나대지(6미터와 8미터 도로변(코너)에 공지 상태	인근대지(도림동144-185)에 공지상태로 관리중임	한국감정원	35,500,000 원	유

3. 처분 사유.

공유재산(잡종지)은 소규모 면적(7.5평)이므로 공공재산 활용이 불가능하며, 공유지 인접 지주로부터 공유지 매수 신청이 있어 구세의 수입증대 및 공유지 관리의 효율화.

4. 처분방법

공유지 면적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면적에 미달되며 또한 공유지 위치가 인근지주(김갑수)의 대지에 인접하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7, 24호에 의거 매각코자 함.

5. 처분재원의 용도.

공유지 매각대금은 구세의 잡수입 처리함.